

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

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(이하 “청년위원회”라 한다)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센터, 경기콘텐츠진흥원,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, (재)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, 부산정보산업진흥원, 인천정보산업진흥원, (재)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-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분야의 청년 창업과 취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

-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- 1. 청년위원회는 대학 및 청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 창직·창업·취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.
- 2.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위원회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에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융합콘텐츠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.
- 3.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청년위원회의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공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한다.
- 4. 전국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코리아랩 인프라 제공 및 청년 창업 프로그램, 성공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한다.
- 5. 협약 체결기관은 청년들이 문화창조융합 콘텐츠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분야로 창직·창업·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- 6. 1호~5호의 협력은 청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, 청년위원회의 청년 진로 멘토링 사업인 ‘청년, 문화창조융합캠프’ 사업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.

제3조 (실무협의)

- 각 기관은 원활한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, 상호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.

제4조 (성실이행)

- 각 체결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 (기타사항)

- 본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실천사항, 업무일정, 효력기간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시행한다.

2016년 3월 3일

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
위원장 박 용 호

박 용 호

문화창조융합센터
센터장 강 명 신

강명신

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
원장 김 준 한

김준한

부산정보산업진흥원
원장 서 태 건

서태건

(재)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
원장 이 신 후

이신후

문화체육관광부
장관 김 종 덕

김종덕

경기콘텐츠진흥원
원장 박 현 용

박현용

(재)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
원장 양 유 길

양유길

인천정보산업진흥원
원장 김 상 룡

김상룡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송 성 각

송성각